

제 1783 호  
1993. 11. 13.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이원중  
편집인: 양보관 김우석  
전화: 731-6111~3  
인쇄: 한국컴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  
전화: 273-8111~3

# 시보

차 례

● 고 시

제 1993-358 호 사료 성분등록 ..... 2  
제 1993-361 호 서울특별시구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..... 3

일																					
월									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“함께하는 고통분담 함께웃는 밝은내일”

0957

## 고 시

고시합니다.

1993. 11. 13

서울특별시장

## ●서울특별시고시제1993-358호

## 사료성분등록

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
수입배합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을 같은 법  
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

## 1. 등록업체명: (주)한영당밀

- 소재지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
1552-4

- 대표자: 장낙권

- 등록사료(2종): 인도네시아 "피티 인  
트라 웨글라 사카르타" 계종은 수입

등록번호	사료의 종 류	사료의 명 칭	사료의 사용범위	사료의 성분량 전화당	비 고
서울-399	수 입	당 밀	배합사료	47.0%	BRIX 76% 이상
		단미사료 (CANE MOL ASSES)	천 료 용	이상	

## 2. 등록업체명: 유동기업(주)

- 소재지: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 
546

- 대표자: 장기주

- 등록사료(1종): 인도네시아 PT.  
SAJANG에서 수입

등록번호	사료의 종 류	사료의 명칭	사료의 용 도	사료의 성분량			비 고
				조지방	산 가	이물질	
서울-400	수 입	식물성유지 3	배합사료	93.0%	30.0%	2.0%	열량 7,000
		단미사료 (CRUDE PALM STE- ARIN-PTSAJANG)	천 료 용	이상	이하	이하	(KCAL/kg) 이상

## 3. 등록업체명: 정한개발(주)

- 소재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 
4가 156-1

- 대표자: 박동현

- 등록사료(4종): 캐나다, 미국에서 수  
입

등록번호	사료의 종 류	사료의 명 칭	사료의 용 도	사료의 성분량				비 고
				조단백질	조섬유	조회분	수 분	
서울-401	수 입	알파파 I	초식가축	17.0%	22.0%	12.0%	12.0%	
		단미사료 (CANADIAN ALFALFA HAY CUBE)	급 여 용	이상	이상	이하	이하	

등록번호	사료의 종류	사료의 명칭	사료의 용도	사료의 성분량				비고
				조단백질	조섬유	조회분	수분	
서울-402	수입 단미사료	알파파 2 (ALFALFA HAY CUBE)	초식가축 급여용	19.0% 이상	22.0% 이상	12.0% 이하	10.0% 이하	
서울-403	"	알파파 3 (ALFALFA HAY CUBE)	"	16.0% 이상	22.0% 이상	12.0% 이하	10.0% 이하	
서울-404	"	알파파 4 (ALFALFA BALED HAY)	"	19.0% 이상	22.0% 이상	12.0% 이하	12.0% 이하	

4. 등록절차명: 적기금성상사(주)  
 · 소재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 
 동 20  
 · 대표자: 진진환  
 · 등록사료(1종): 러시아에서 수입

등록번호	사료의 종류	사료의 명칭	사료의 용도	사료의 성분량				비고
				조단백질	수분	조섬유	조회분	
서울-405	수입 단미사료	불활성효모 (INACTIVATED YEAST "PAPRINE")	배합사료 원료용	55.0% 이상	13.0% 이하	10.0% 이하	16.0% 이하	질소화물 75% 이상

●서울특별시고시제1993-361호  
 서울특별시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  
 관한고시

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의  
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유소 허가기준  
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3. 11. 13

서울특별시장

1. 신청절차

주유소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  
 서류(석유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  
 직)를 구비하여 환할구청 시민봉사실에  
 접수하여야 한다.

2. 허가기준

가. 자격기준

- (1) 석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 
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  
 다.
- (2) 일반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 
 체결한 자이어야 한다.

나. 지역제한

- (1) 주유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
 의 규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과  
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20세대 이  
 상의 공동주택(동일 건축물이 아닌  
 경우에는 대지를 연결한 2개 이상의  
 공동주택을 말한다)의 벽으로부터 적  
 선거리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  
 다.

- (2) 주유소는 학교 정문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3) 주유소 설치위치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
- (4) 주유소 설치면적은 6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- (5) 건축법, 도시계획법, 소방법, 주택건설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.

다. 시설기준

- (1) 저장시설: 40㎥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(2) 주유기 : 4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
- (3)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: 1개소(남·여 구분 설치하고 총면적 10㎡ 이상)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
라. 취급유종: 휘발유, 동유, 경유에 한한다.

3. 제출서류

가.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

나. 토지등기부 등본

다. 공중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(타인 토지의 경우에 한한다)

라.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시설과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및 학교와의 거리를 측정할 도면

4. 허가신청 처리

가. 제출서류가 완비되면 관권기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199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종전고시 폐지)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

종전의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135호는 폐지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허가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, 이 고시 시행 전에 접수 처리중에 있는 주유소의 허가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.